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

제정 2014. 4. 17
개정 2014. 10. 8
개정 2015. 12. 17
개정 2017. 1. 11
개정 2018. 1. 25
개정 2019. 3. 26
개정 2019. 12. 26
개정 2020. 3. 20
개정 2020. 11. 12
개정 2022. 6.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5조제3항제13호 및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4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규칙(이하 “컨소시엄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훈련센터”란「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2. “자율 공동훈련센터”란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라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한 공동훈련센터 중 컨소시엄 사업의 자율적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단 이사장이 선정한 공동훈련센터를 말한다.

3. “파트너훈련기관”이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 중 제42조2에 따라 협약기업에 직업훈련을 제공할 목적으로 공동훈련센터가 선정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4. “협약기업”이란「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5. “허브사업단”이란 규정 제25조 및 컨소시엄 운영규칙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 및 공동훈련센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이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지원금”이란 공단 이사장이 규정 제19조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다), 훈련시설 및 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 훈련비용 등을 말한다.
7. “부담금”이란 공동훈련센터가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규정 별표 1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8. “훈련과정운영비”란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별표 1 “규정 제19조제4항 관련”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9. “기준단가”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말한다. <개정 2022.6.28.>
10. “지원단가”란 별표 1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1인 기준의 시간당 단가를 말한다.
11. “연인원”이란 컨소시엄 훈련과정을 수료한 총 누적인원을 말한다.
12. <삭제 2019.3.26>
13. “기부채납”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부채납을 말한다.

제4조(수행업무) 공단은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하여 컨소시엄 운영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심의위원회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컨소시엄 운영규칙 제5조부터 제7조의3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12.26>

제6조(심사위원풀 구성·운영) 심사위원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컨소시엄 운영규칙 제8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3.26>

제7조(비밀유지 및 윤리준수의 의무) ① 심의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은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한 심의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모든 고객정보, 심사·결과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3.26>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및 윤리준수의 의무를 위하여 민간위원 위촉 시 위원회 운영 표준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1년 단위로 업무매뉴얼 제1호 서식「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제3장 공동훈련센터의 선정·심사 및 평가 등

제8조(공동훈련센터의 선정) ① 이사장은 규정 제7조에 따라 규정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되, 서면심사 결과에 따라 파트너훈련기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영리 목적의 기관은 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할 수 없다.

② 공동훈련센터의 선정은 컨소시엄 운영규칙 제10조 및 별표3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3.26>

③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 선정을 신청한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연도에 2회를 초과하여 공동훈련센터 선정을 신청한 경우(다만, 제출기한은 상반기로 제한한다)

④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한 경우 규정 제10조에 따라 업무매뉴얼 제2호 서식「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 선정 통지서」를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고 제3호 서식「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자율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 자율공동훈련센터 선정 등의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9조(컨소시엄 협약체결) ① 규정 제10조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선정을 통지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업무매뉴얼 제4호 서식「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서」에 따라 협약(예정)기업과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는 「고용보험법시행령」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협약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과도 제1항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심사)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13조 및 공단이 공고하는 내용에 따라 소관 부처의 인력양성 계획 및 훈련과정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당해 연도 10월 말까지 제출하고 HRD-Net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②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단이 정한 기간 동안의 실적 중 컨소시엄 운영규칙 별표6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③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연인원 목표를 500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규모, 업종별 특성, 선정시기 등에 따라 목표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이사장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컨소시엄 운영규칙 제13조제5항 및 별표4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3.26>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승인된 훈련과정으로 훈련시설·장비가 동일한 과정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은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훈련과정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동훈련센터에 기한을 정하여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훈련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기간의 연장) ① 공동훈련센터가 규정 제8조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업무매뉴얼 제5호서식「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기간의 연장 및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동훈련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훈련센터의 성과평가) ① 이사장은 매년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전담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존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와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0., 2022.6.28.>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규정 별표1의 운영비 지원한도의 100분의 10범위(단,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전담 공동훈련센터는 기존과 별도로 컨소시엄 운영규칙 별표 1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운영비 지원한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장려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훈련센터는 장려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20., 2022.6.28.>

1. 직업훈련전담자(이하 "전담자"라 한다)에 대한 성과급
2. 일반운영비(다만, 매식비는 성과급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20>
3.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비용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부진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기준은 컨소시엄 운영규칙 제18조의3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3.26>

④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컨소시엄 사업의 지원기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

제13조(공동훈련센터 등의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 및 제21조에 따른 훈련과정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제14조(지원금의 신청 등) ① 공동훈련센터는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업무매뉴얼 제6호 서식「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의 부담금 납입 여부를 확인한 후 컨소시엄 사업 전용통장으로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부담금의 납입이 어려운 공동훈련센터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6.28.>

④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 지급일 전일까지 지원금과 지원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을 정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 훈련시설・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 등에 관한 지원을 받는 경우
2. 훈련실시 이전에 규정 제19조제4항제2호에 따라 훈련과정운영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보증 또는 보험기간은 사업시행기간 종료일(시설 및 장비에 관한 지원금은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은 연도부터 6년간)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은 연도부터 6년 이후 컨소시엄 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공동훈련센터는 업무매뉴얼 제7호 서식「지원금 반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매뉴얼 제7호 서식「지원금 반환 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대학교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⑦ 제4항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 중 인건비와 훈련시설·장비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훈련시설·장비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는 지출금액의 65%만 인정한다.

제14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공동훈련센터는 별도의 회계 계정을 설정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예금자 보호가 되고 금리가 높은 계좌를 개설하는 등 지원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의3(공동훈련센터 선정 취소 및 지원제한 등) ① 규정 제12조에 따른 선정 취소 및 지원제한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컨소시엄 운영규칙 제18조의3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3.26>

② 지원이 제한된 공동훈련센터의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사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8.>

③ 공단은 공동훈련센터가 규정 및 규칙의 절차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컨소시엄 운영규칙 제18조의3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3.26>

제15조(공동훈련센터 부담금의 이행)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가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규정 별표 1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에 따른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지 않은 해당 금액에 대응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는 반환 받아야 한다.

제16조(인건비의 사용) ① 공동훈련센터는 지원금으로 지원받은 인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 제16조에 따른 전담자의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공동훈련센터 내의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급여
2. 공동훈련센터와 전담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된 특별상여금 등의 급여
3. 전담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공동훈련센터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공동훈련센터가 사용한 인건비의 사용 내역은 사업 회계연도 중 전담자에게 직접 지급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회계연도가 정부 회계연도와 다를 경우 매월 임금대장 등으로 산정한다.

제17조(일반운영비의 사용)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별표 1「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받은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는 규칙 별표 1「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훈련시설비의 사용)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별표 1「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받은 훈련시설 및 장비 중 훈련시설에 관한 비용(임차보증금 포함)은 규칙 별표 1「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훈련장비비의 사용)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별표 1「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

용」에 따라 지원받은 훈련장비에 관한 비용은 규칙 별표 1「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컨소시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프로그램개발비 등의 사용)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별표 1「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받은 프로그램개발비 등에 관한 비용은 규칙 별표 1「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훈련과정운영비의 신청 및 지원) ① 이사장은 규정 제19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훈련과정운영비를 지급하는 경우, 최종 사업계획서 및 별표 1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선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에 훈련과정운영비를 지급할 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훈련센터가 분할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훈련센터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사장이 정한 바에 따라 분할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훈련과정운영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정산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을 통하여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승인된 과정 추가 개설 또는 정원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절차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공동훈련센터의 사업 운영

제22조(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15조에 따라「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훈련센터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내부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장이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훈련센터의 장 또는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총괄책임자로 한다. 다만, 공단 직원 또는 해당 공동훈련센터 사업관계자는 운영위원(다

른 공동훈련센터 사업관계자는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로 참여가능)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23조(전담자의 업무) ① 전담자는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및 평가 계획 수립, 교재 및 교보재 개발 등의 업무
2. 훈련생 관리 및 상담, 교·강사 선정 및 관리, 교육훈련 실시 등의 업무
3. 협약기업 발굴, 협약기업 유지 및 관리 등의 업무
4. 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 협약기업 담당자 및 훈련생 만족도 조사, 훈련생 사후관리 등의 업무
5.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
6.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예산 관리, 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 사업 실적 및 성과관리 등의 업무
7. 파트너훈련기관 운영 및 현장점검, 예산관리, 실적 및 성과 관리 등의 업무

② 전담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외에 협약기업의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협약기업의 NCS 활용 컨설팅 및 일학습병행제 확산 관련 업무
2. 그 밖에 컨소시엄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제16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받는 전담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의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24조(컨소시엄 사업관계자 직무능력향상 지원) ①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관계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허브사업단 등에서 운영하는「컨소시엄 사업 담당자 직무교육 훈련과정」등에 소속 컨소시엄 사업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허브사업단은 컨소시엄 사업관계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③ 허브사업단은 제2항의 컨소시엄 사업관계자를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을 허브사업단의 운영비용 등 컨소시엄 지원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협약기업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① 공동훈련센터는 협약기업의 훈련수요에 따라 향상훈련과 채용예정자훈련 등 적정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3.26>

③ 공동훈련센터는 협약기업의 재직근로자 등을 위한 직업훈련을「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3조제2항 각호에 따른 집체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6.28.>

④ 공동훈련센터는 수요가 있는 경우 협약기업의 사업장 등 공동훈련센터의 시설 이외의 장소에 이동하여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28.>

1.「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제26조(훈련과정의 운영 등) ① 공동훈련센터가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으로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위탁계약서 및 채용예정 약정서 없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8조에 따른 훈련 실시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훈련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따른다.

제27조(수료기준) 훈련과정운영비의 지원을 받기 위한 수료기준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에 따른다. 다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11조에 따른 기준과 동일한 기준인 경우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제28조(훈련과정의 신설 및 폐지)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훈련과정의 신설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훈련과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훈련과정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훈련과정 폐지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예정일 3일전까지 공동훈련센터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지원금 사용에 대한 변경)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의 변경예정일 3일전까지 공동훈련센터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3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액하는 경우 <개정 2019.3.26>
2. 인건비, 일반운영비, 훈련시설·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의 각 지원항목 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 별표 1과 관련하여 인건비에서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1.12.>
3. 기업수요맞춤형 훈련에 참여하는 공동훈련센터에 3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원금(훈련시설비 및 장비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단, 프로그램개발비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2.6.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예정일 20일전까지 이사장에게 지원금 사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사장은 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변경예정일 3일전까지 공동훈련센터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이사장은 안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동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20.11.12>

1. 훈련시설·장비의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없는 품목에 대해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2. 훈련시설 및 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의 입찰차액(집행 잔액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3. 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3천만원 이내에서 증액하는 경우
4. 훈련과정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훈련과정 운영비를 변경(증액 포함)하는 경우
5. 훈련과정 회차를 증회하거나 훈련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 2020.11.12>

③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조달 입찰계약 절차에 따라 일괄 계약을 하여 훈련시설·장비비의 단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훈련센터는 변경예정일까지 운영위원회 의결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운영에 대한 변경)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까지 변경사항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훈련센터의 기관명이 변경되는 경우
2. 공동훈련센터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제31조(훈련실적 산정 등) ① 공동훈련센터의 훈련실적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HRD-Net에 등재된 수치로 산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 공동훈련센터가 업무매뉴얼 제8호 서식「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추진 실적」양식에 따라 훈련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장 지원금 관리와 정산 등

제32조(훈련시설 및 장비 등의 계약) ① 공동훈련센터는 훈련시설 및 장비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의 법률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준하는 입찰계약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32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공동훈련센터는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2.6.28.>

제33조(훈련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 ① 공동훈련센터는 지원받은 훈련시설, 장비, 교재, 교보재 등에 대하여 업무매뉴얼 제9호 서식에 따른 표식을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지원받은 훈련시설, 장비, 교재, 교보재 등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자산관리대장(이하 “자산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HRD-Net 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관리번호
2. 품명
3. 구입금액, 지원금액
4. 매연도말 기준의 수량 증감, 감가상각 등을 실시한 후 남은 가액(잔존가액)
5. 활용실적

③ 공동훈련센터는 지원받은 훈련시설, 장비 등을 컨소시엄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정부지원 교육·훈련·평가 사업, 협약기업 근로자의 훈련시간외 실습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은 훈련시설, 장비 등은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9.3.26>
④ 공동훈련센터는 지원 받은 교재, 교보재 등을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협약기업 등에 배포, 비영리적인 목적에 한해 활용토록 할 수 있다.

⑤ 공동훈련센터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제35조에 따라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공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재산 처분제한 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6.28.>

제34조(훈련시설 및 장비의 내용연수 등) ① 공동훈련센터는 지원을 받아 설치, 구입 등을 한 훈련시설 및 장비를 마지막으로 지원받은 연도부터 6년 이상 컨소시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 내용연수표」에 따른 내용연수가 도래한 훈련시설로 교육훈련 등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에 따라 내용연수가 도래한 훈련장비로 교육훈련 등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3. 고장, 파손 등에 따른 수리비용이 해당 훈련시설, 장비의 현재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4. 기술변화나 활용실적이 많아 정상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5. 제4항에 의한 훈련시설 대체로 인하여 기존 지원 장비에 대한 사용이 불가한 경우(훈련장비에 한한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훈련시설, 장비에 대한 불용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실시하는 회계정산시 제39조에 따라 선정한 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받은 훈련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프로그램 등의 관리) 공동훈련센터는 지원금으로 개발·구매한 커리큘럼·교재·실습자료(교보재)에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개발자, 개발연도, 세부 재원(지원금 또는 투자금), 인용자료 출처 등 개발·구매 관련 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6조(지원금 사용시기) ① 공동훈련센터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금을 집

행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연도 12월에 집행된 금액이 당해 연도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공동훈련센터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지원금에 대한 회계정산이 완료되기 전까지 지원금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규칙 제41조에 따른 지원금 사후대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타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9.3.26.>

제37조(지원금 지출내역 제외) ① 관세, 부가가치세, 지원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 받는 금액은 당해 연도의 지원금의 사용내역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수돗물, 교육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지원금에 포함할 수 있다.

제38조(전용카드 사용 및 지출방법)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22조제4항에 따라 공단이 발급한 전용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관리시스템에 해당 증빙자료를 입력하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회의수당 및 출장비, 인건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인 경우
2. 소액,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 이내의 현금(간이세금계산서)으로 지출하는 비용인 경우
3. 조달 입찰계약 등 상당한 정도로 투명하게 지출되는 비용인 경우
4. 과다한 수수료 부과 등으로 계좌이체로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공사, 장비구입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되는 비용인 경우
5. 용역, 개발 등의 비용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되는 비용인 경우
6. 기타 매식비를 제외한 비용 중 이사장이 전용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승인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 <개정 2020.3.20>

② 이사장은 전용카드 운영을 위한 전담신용카드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전용카드와 연계된 지원금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39조(회계정산 수행자의 공모 및 선정) ① 이사장은 지원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훈련센터와 파트너훈련기관에 대한 회계정산 업무를 전담할 자를 공모·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계정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공단 사업과 관련 있는 내·외부 경영평가위원
2. 공단의 공인회계사
3. 공동훈련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거나 이었던 자(이 경우 해당 공동훈련센터의 회계정산에 한한다)
4. 공단 회계감사를 전담하는 회계법인
5. 공동훈련센터 회계감사를 전담하는 회계법인(이 경우 해당 공동훈련센터의 회계정산에 한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와 업무약정서를 체결하고 해당 공동훈련센터에 회계정산 수행자에 대한 선정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제2항에 따른 회계정산 수행자와 공동훈련센터 간 계약을 체결하고 회계정산을 받아야 한다. 단, 공단과 회계법인 사이에 체결한 업무약정서로 충분한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정산서류 등) ① 공동훈련센터는 규정 제23조에 따라 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정산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사용실적을 월 1회 이상 국가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정산을 실시할 경우 이사장에게 제출하는 정산관련 증빙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6.28.>

② 이사장은 회계정산 수행자에게 공동훈련센터를 방문하여 회계정산 및 현장정산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비 및 훈련프로그램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회계정산 수행자에게 회계정산 결과보고서를 총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의2(회계정산에 따른 지원금 반납 및 환수) ① 이사장은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회계정산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 또는 반납을 하도록 한 후 이를 국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1. 컨소시엄 사업 목적과 달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컨소시엄 사업과 연관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규정과 규칙의 지출항목을 위반한 경우
4. 착오 등으로 잘못 지출한 경우
5. 지원금 잔액, 이자 등

② 이사장은 회계정산 시 환수금액 미발생 및 미확정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금액(퇴직급여충당금 등)에 대하여는 차기년도의 회계정산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때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환수, 반납토록 할 수 있다.

제40조의3(회계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동훈련센터는 회계정산 수행자의 가정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업무메뉴얼 제11호 서식에 맞춰 소명자료와 함께 회계정산 수행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회계정산 수행자는 이의내용을 검토 후 공단에 통보하여 하며, 공단은 회계정산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40조의4(자체 회계정산) 제39조와 제40조에도 불구하고 자율공동훈련센터 등 이사장이 정한 공동훈련센터는 자율적으로 회계정산 수행자를 선정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써 회계정산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의5(사업종료 등에 따른 지원금 반납 및 환수) ① 공동훈련센터는 의무이행기간 완료 이전 또는 완료 후에 컨소시엄 사업을 종료하거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규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감가 상각하고 남은 가액, 훈련시설 및 장비의 임차보증금 전액,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 환수시 해당 공동훈련센터에 기간을 정하여 반납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동훈련센터가 사업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60일 전까지 공단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지원금 사후 대체) ① 공동훈련센터는 승인받은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체 예산으로 우선 집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예산으로 우선 집행한 후 지원금으로 대체 처리할 수 있다.

1.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개최비용과 수요조사 비용 및 승인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홍보비
2. 협약기업의 요청에 따라 시급하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소요된 교육훈련 관련 비용
3. 차기년도 신규 훈련과정 개설을 위한 직무분석, 교육과정개발 등의 프로그램개발 비용(다만, 사업계획 심사 시 적격 과정에 한함)

제42조(현장 모니터링 실시) ① 이사장은 규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공단 지부·지사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부・지사의 담당자는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심사, 지도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 시설・장비 및 훈련 실시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모니터링은 훈련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평일에 실시한다. 다만, 부정·부실 훈련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공단 지부·지사의 직원은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휴일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휴일 현장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인정 및 모니터링 업무처리 규칙」의 [별표 1]을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2(파트너훈련기관을 활용한 교육훈련 실시) ①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트너훈련기관을 활용하여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파트너훈련기관 소속 근로자는 해당 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

1. 협약기업의 훈련수요가 많아 공동훈련센터의 자체 시설만으로는 협약기업의 훈련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협약기업이 요구하는 훈련과정을 공동훈련센터의 시설・장비, 교・강사 등으로는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약기업이 요구하는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동훈련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다른 훈련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비용, 교육훈련 효과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에 따라 파트너훈련기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파트너훈련기관에 지원할 훈련비용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파트너훈련기관의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 권한과 의무를 지며, 파트너훈련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파트너훈련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동훈련센터는 파트너훈련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20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사업운영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변경예정일 3일전까지 공동훈련센터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파트너훈련기관의 지원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장 지원기관 등

제43조(지원기관) ① 이사장은 전략분야 인력양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허브사업단 등 컨소시엄 운영규칙 제7장의 지원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필요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1항의 지원기관 이외의 별도의 지원기관을 선정·지원할 수 있다.

제8장 서류보존

제44조(서류의 보존) ① 이사장은 규정 제9조 및 규칙 제10조에 따라 공동훈련센터 선정 또는 지원기간 연장, 사업계획 변경 등을 위한 심사 관련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심사에 따른 의견서 및 채점표(수시훈련과정 심사 채점표 포함)는 당해 연도 사업시작일로부터 3년(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신규 공동훈련센터 선정 또는 차기년도 사업계획 심사를 위한 심사용 사업계획서는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시까지
3. 심사위원단 심사결과 및 사업계획 심의·의결에 따른 최종 사업계획서는 당해 연도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개정 2019.3.26>
4.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사업계획서는 당해 연도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② 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 운영에 관련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신규 공동훈련센터 선정 또는 차기년도 사업계획 심사를 위한 심사용 사업계획서는 당해 연도 사업종료일까지
2. 심사위원단 심사결과 및 사업계획 심의·의결에 따른 최종사업계획서는 당해 연도 사업시작일로부터 6년 <개정 2019.3.26>
3.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사업계획서는 당해 연도 사업시작일로부터 6년
4. 훈련과정 운영 및 정부지원금 관련 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정산을 하지 않는 훈련비용의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승인된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의 사업계획은

승인 당시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에 따른다. 다만, 별표 4 “운영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제13조 관련)” 중 “3. 규정 제19조제4항 관련” 부분의 식비는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운영규칙에 대한 경과규정) 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심사된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의 사업계획은 승인 당시의 규칙에 따른다.

②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관련된 사항은 2015년도 성과평가 결과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공동훈련센터 중 임차 계약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였거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한 공동훈련센터는 임차 계약기간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공동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중 “3. 규정 제19조제4항(훈련과정운영비) 관련”의 훈련과정운영비 정산에 관한 부분은 2015년도 지원금 회계정산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운영규칙에 대한 경과규정) 공동훈련센터의 2017년도 사업계획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심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운영규칙에 대한 경과규정) 공동훈련센터의 2018년도 사업계획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심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3. 규정 제19조

제4항(훈련과정운영비) 관련 중 (4) 채용예정자 훈련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과정에 대해 적용한다.

제2조(기존 운영규칙에 대한 경과규정) 공동훈련센터의 2019년도 사업계획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심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운영규칙에 대한 경과규정) ① 채용예정자 훈련의 훈련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과정에 대해 적용한다.

②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과 관련된 사항은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③ 별표 7 공동훈련센터 성과 평가지표에 관련된 사항은 2020년에 실시하는 2019년도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에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예정자 훈련 과정의 훈련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채용예정자 훈련에 대한 운영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종료되는 과정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성과평가 지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지표에 관련된 사항은 2021년에 실시하는 2020년도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에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0.11.12., 2022.6.28.>

<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제13조 관련) >

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1조제2항 관련

○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공고한 기준에 따른다

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별표 1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 관련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별표 1의 규정을 따른다.

3.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제4항(훈련과정운영비) 관련

가. 지원대상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제4항에 따라 전략분야 인력양성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 식비, 숙식비, 훈련수당 등의** 훈련과정운영비는 다음과 같다.

나. 지원범위 및 수준

지원대상에 따른 훈련과정운영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훈련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① 공동훈련센터가 기준단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NCS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에 따른다.

② 공동훈련센터가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훈련과정운영비의 지원단가(1인당 시간당 단가) 산정을 위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은 컨소시엄 운영규칙 별표 1을 따르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단가가 기준단가의 100분의 30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훈련비는 공단이 정한 시기에 정산한다.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단가가 기준단가의 100분의 200이하인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규칙 제21조 1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에 선지급한 훈련과정운영비는 회계정산 시 함께 정산하여야 한다.

④ 3개월 이상 운영하는 채용예정자 훈련의 경우 1개월 단위로 훈련비용에 대해 중도 지급할 수 있다.

(2) 식비 또는 숙식비, 훈련수당은 컨소시엄 운영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삭제 2019.3.26>

[별표 3] <삭제 2019.3.26>

[별표 4] <삭제 2019.3.26>

[별표 5] <삭제 2019.3.26>

[별표 6] <삭제 2019.3.26.>

[별표 7] <삭제 2022.6.28.>